

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1.6.14		16		
2	2012.12.21		17		
3	2015.1.13		18		
4	2016.1.7		19		
5	2017.3.1		20		
6	2018.10.22		21		
7	2020.2.20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직원,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(이하 “교직원 등”이라 한다)의 발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무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을 한 자(이하 “발명자”라 한다)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·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1.13>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직무발명”이라 함은 본교 교직원 등이 현재 또는 과거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성질상 본교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.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, 계약교수, 초빙교수, 직원, 연구원, 학생이 본 대학교,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지식재산권을 말한다. 법률 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 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,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도 직무발명으로 본다.<개정 2015.1.13.,2020.2.20>
2. “자유발명”이라 함은 “직무발명”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.
3. “외부발명자”라 함은 교직원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.
4. “지식재산권”이라 함은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, 저작권,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, 기타 신지식재산권 및 연구수행 중 획득한 기술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.<개정 2015.1.13>
5. “기술실시”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·의장·반도체배치설계, 디자인·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,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·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노하우 등(이하 “기술”이라 한다)이 양도·실시권 허가·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20.2.20>

제3조 (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) ① 본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해 지식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승계한다.<개정 2015.1.13>

- ② 직무발명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.
- ③ 본교가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④ 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본교에 양도한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.13>

제 2 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<개정 2015.1.13>

제4조 (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) 본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협력단”)내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<개정2015.1.13>

제5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5.1.13., 2018.10.22.>

1. 직무발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
2. 교직원의 지식재산권 승계에 관한 사항
3. 지식재산권의 유지에 관한 사항
4. 외부기관의 비용지원이 없는 해외출원에 관한 사항
5. 해외출원 시 협력단의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
6. 본 규정의 적용, 운영 및 개정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 각호에 관련된 사항

제6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협력단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, 교수 6인 이내, 1인 이상의 관련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<개정 2011.6.14.,2018.10.22>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협력단 산학협력팀장이 된다.<개정 2020.2.20>

④ 위원회 산하에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교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0.2.20>

제7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<개정 2020.2.20>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발명의 신고와 권리의 귀속

제8조 (발명의 신고) ① 교직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2.20>

1. 발명신고서(별지 제1호 서식)
2. 발명요약서(별지 제2호 서식)
3. 선행기술조사서(별지 제3호 서식)
4. 권리승계합의서(별지 제4호 서식)<신설 2018.10.22>

② 선행기술조사서는 협력단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자유발명을 한 교직원은 제1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명신고를 해야 하며, 위원회는 자유발명 여부를 심의한다.<개정 2017.3.1.,2020.2.20>

- ④ 제1항과 제3항의 신고를 받으면 단장은 제9조에 의거 승계 여부를 결정하거나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.<개정 2018.10.22.,2020.2.20>

제9조 (승계의 결정 및 통지) 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인해 도출된 직무발명은 단장의 결정으로 자동 승계하며, 기타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경우 제 3 조 및 제 8 조의 규정에 의거 총장이 권리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. 단,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경우는 발명의 형태와 무관하게 제8조 1항의 신고서류를 접수 후 단장이 승계를 결정한다.<개정 2012.12.21>

- ② 기타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경우,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신규성 확보를 위하여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출원 등의 절차를 우선 진행 후, 추인할 수 있다.<개정 2020.2.20>

- ③ 단장은 전항의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2.20>

제10조 (권리의 양도) 발명자는 본교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별지 제4호의 증서에 의하여 본교에 양도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출원) 단장은 전조의 증서를 받은 즉시 본교 명의로 발명에 대한 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출원 등의 제한) 발명자는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본교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그 출원을 하거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3조 (출원 비용) ① 본교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 출원을 위한 경비는 협력단이 전액 부담한다.

- ② 본교가 발명자와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출원인에게 경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.

- ③ 해외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발명자가 소요비용의 50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단장의 승인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20.2.20>

- ④ 출원 우선심사요청, 등록 거절 특허의 불복 심판 및 소송제기에 대해서는 발명자가 소요비용의 50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단장의 승인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20.2.20>

제14조 (지식재산권의 승계) 교직원인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본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 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5.1.13>

제15조 (지식재산권의 유지)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본교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권리의 포기 또는 발명자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. 이러한 심의·결정은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후에는 1년마다 심의·결정할 수 있다.<개정 2012.12.21.,2015.1.13.,2016.1.7.,2020.2.20>

제 4 장 기 술 실 시

제16조 (계약체결) 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기술 등에 대하여 제3자(이하 “실시자”라 한다)가 이를 사용, 활용 및 사업화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당해 발명자 및 공동권리자 등과 함께 실시자와 협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한다. 다만, 법령 등이 기술실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.<개정 2012.12.21.,2020.2.20>

제17조 (계약조건) 기술실시 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양도, 실시권 허가,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<개정 2012.12.21.,2020.2.20>

1. 실시권 허가는 전용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, 시장규모, 실시조건,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.
2.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(매출액 대비 정율(%) 또는 정액)로 구분한다.
3. 기술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법령 등의 규정, 제품, 또는 기술의 수명, 기술수준, 시장성,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20.2.20>
4. 실시자가 자금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.
5. 기술료에 대한 부가세 포함 여부는 관련기관 규정 등을 고려해 실시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에 반영한다.<신설 2012.12.21>

제18조 (계약의 해지) ① 실시자가 본교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실시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, 실시자의 요구 및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2.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<개정 2020.2.20>
3.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

③ 협력단은 기술실시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기술실시 계약자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무단사용과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2.20>

제 5 장 보 상 금

제19조 (기술실시료 배분) ① 협력단은 기술실시료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분한다.

1.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기관이 있는 연구과제에 의해 발생한 기술실시료는 관련 지원기관의 기술료 지급기준에 따른다.
2. 기타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실시료는 발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② 발명자 보상금 중 박사 후 연구원, 전임연구원,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제20조에 따라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,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단장이 개별 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.
[전문개정 2020.2.20.]

제20조 (발명자의 지분)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발명자 공동의 명의로 각자의 지분을 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가 없는 경우에 발명자의 각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.

제21조 (보상금 지급시기) 협력단은 기술료가 입금된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발명자와의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20.2.20>

제22조 (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) ① 보상금의 지급청구권은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 후에도 존속한다.

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.

제23조 (보상금의 반환)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에 의하거나 기타 발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발명자, 외부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 및 특허 출원·등록 및 유지에 소요된 제 비용을 협력단에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6 장 보 칙

제24조 (발명자의 의무) 발명자는 특허출원, 심사, 심판 및 소송,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본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.

제25조 (비밀의 유지)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
제26조 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
<별표 1><신설 2018.10.22>

	<h2>별지 제1~4호 서식 작성요령</h2>
<p>[별지 제1호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발명의 명칭 : 발명신고서·명세서·권리승계합의서 상의 명칭이 동일하여야 함 2. 발명자의 성명, 지분율, 소속 및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3. 발명의 공개여부 : 공개여부에 따라 우선권 주장 및 기타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4. 신고자는 한국항공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신고하여야 함 5. 이용 희망하는 특정 특허사무소가 있는 경우 “있음”에 표기하고, 특허사무소명을 기재함 <p>[별지 제2호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. 권리구분 : 해당사항에 표기 7. 출원희망국 : 국내출원인 경우 “국내”로 표기하고, 해외출원인 경우 해당 출원희망국가명 또는 “PCT”로 기재함 8. 발명의 주요내용 : 주된 발명의 내용을 5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9. 발명의 특징 : 본 발명의 특성 및 특징을 신규성, 진보성을 기준으로 3줄 이상으로 작성 10. 적용·응용분야 및 시장성: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산업 및 대상 물품이나 관련 기업 및 국내외 시장성을 3줄 이상으로 작성 <p>※ 상기 8, 9, 10번 항목은 가급적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1. 기술분야 : <별표 2>를 참고하여 해당사항에 표기 12.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코드기술분야 : <별표 3>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코드명 표기 13. 기타 :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기술 14. 관련연구 : 서지사항에 연계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관련연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함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, www.ntis.go.kr)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) 15. 발명의 요약내용 : 발명명세서의 “요약서”를 기록 16. 대표도면 : 발명명세서의 “대표도면” 17. 대표도면의 간단한 설명 : 발명명세서의 “도면의 설명”을 기록 <p>[별지 제3호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8. 기존 기술 대비 신규성, 진보성 등을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<p>[별지 제4호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9. 양도인 : 발명자 전원의 정보를 각각 입력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	


<별표 2><신설 2018.10.22>

구분	분류 기준
IT (정보기술)	핵심부품(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기술, 집적회로기술 등), 차세대네트워크기반(4세대 이동통신, 대용량 광전송시스템기술 등), 정보처리시스템 및 S/W(멀티미디어 단말기 및 운영체제기술, 정보보안 및 암호기술 등)
BT (생명공학기술)	기초·기반기술(유전체기반기술, 단백질체 연구 등), 보건의료 관련 응용(바이오신약개발기술, 난치성 질환치료 기술 등), 농업·해양·환경관련 응용(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기술, 농업·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등)
NT (나노기술)	나노소자 및 시스템(나노전자소자기술, 나노정보저장기술 등), 나노소재(나노소재기술 등), 나노바이오 보건(나노 바이오물질 합성 및 분석기술, 의약 약물전달 시스템 등), 나노기반·공정(원자·분자레벨 물질 조작기술, 나노 측정기술 등)
ST (우주항공기술)	위성기술(위성설계 및 개발기술, 위성관제기술 등), 발사체기술(로켓추진기관기술, 소형위성 발사체개발기술 등), 항공기기술(항공기 체계종합 및 비행성능기반기술, 지능형 자율비행 무인비행기시스템 등)
ET (환경·에너지기술)	환경기반(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, 자연환경·오염토양·지하수의 정화·복원기술 등), 에너지(에너지소재기술, 미활용 에너지 이용기술 등), 청정생산(청정원천공공기술, 환경친화형소재 (Eco-material) 개발기술 등), 해양환경(해양환경 관련기술, 연안 생태계 복원기술 등)
CT (문화기술)	문화콘텐츠(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, 디지털영상·음향 및 디자인기술 등), 생활문화(사이버커뮤니케이션 기술,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술 등)
기타	위의 6T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


<별표 3><신설 2018.10.22>

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(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)			
1. 아래의 내용 참고하여 코드 중 택일할 것 2. 본 표준분류 코드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주관 “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” 지침에 따른 구분으로서, 실태조사 결과에 반영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할 것			
분야	분류체계	코드	
과학기술	자연	수학	NA
		물리학	NB
		화학	NC
		지구과학	ND
	생명	생명과학	LA
		농림수산식품	LB
		보건의료	LC
	인공물	기계	EA
		재료	EB
		화공	EC
		전기/전자	ED
		정보통신	EE
		에너지/자원	EF
		원자력	EG
		환경	EH
건설/교통		EI	
역사/고고학		HA	
철학/종교		HB	
인문사회	인간	언어	HC
		문학	HD
		문화/예술/체육	HE
		법	SA
		정치/행정	SB
	사회	경제/경영	SC
		사회/인류/복지/여성	SD
		생활	SE
		지리/지역/관광	SF
		심리	SG
		교육	SH
		미디어/커뮤니케이션/문헌정보	SI
		인간과학과 기술	OA
	인지/감성과학	OB	
	과학기술과 인문사회	OC	
임시	인력 및 인프라	OX	

별지 제2호 서식<개정 2018.10.22.,2020.2.20>

	발 명 요 약 서 (1)		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
발명의 명칭	국문 :		
	영문 :		
권리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특허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용신안 <input type="checkbox"/> 의 장 <input type="checkbox"/> 상 표	출 원 희망국	
발명의 주요내용	(5줄이상)		
발명의 특징 (신규성·진보성)	(3줄이상)		
적용·응용분야 및 시장성	(3줄이상)		
기술분야 (6T)	<input type="checkbox"/> IT(정보기술) <input type="checkbox"/> BT(생명공학기술) <input type="checkbox"/> NT(나노기술) <input type="checkbox"/> ST(우주항공기술) <input type="checkbox"/> ET(환경·에너지기술) <input type="checkbox"/> CT(문화기술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코드			
기타사항			
관련연구	연구과제명		
	교내 KIS 과제번호		
	과제고유번호	<i>NTIS에서 조회한 과제고유번호 숫자 10자리</i>	
	(기관)세부과제번호	<i>NTIS에서 조회한 (기관)세부과제번호</i>	
	연구지원사업명		
	연구개발비재원기관	<i>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토교통부 등</i>	
	주관기관		
총연구기간		총연구비(원)	


별지 제2호 서식 (계속)

	<h2 style="margin: 0;">발 명 요약 서 (2)</h2>	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
발명의 명칭	국문 : <hr style="border-top: 1px dotted black;"/> 영문 :	
발 명 의 요 약 내 용		
대 표 도 면		
도 면 의 간 단 한 설 명		

별지 제3호 서식<개정 2018.10.22>

	<h2 style="margin: 0;">선행기술조사서</h2>	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
<p>1. 산업재산권(관련기술분야 기존특허 등) 조사 [특허청(자료열람실), KIET특허정보(D/B) 등 이용]</p>		
기존특허 제목, 특허번호, 일자 등	본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? (신규성)	본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? (진보성)
<p>2. 참고문헌, 학회지 등</p>		
문헌명, 저자 페이지 등	문헌내용 (본 발명과 관련된 요점만 간략히)	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특징은 무엇인가?

별지 제4호 서식<개정 2018.10.22>

		권리승계합의서		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
발명 명칭	국문 :			
	영문 :			
양도인	성명	(인)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성명	(인)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성명	(인)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성명	(인)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성명	(인)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기타 :			
	양수인	성명	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	
주소	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		
<p>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, 저작권 등을 한국항공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정(제5장 보상금)에 따른 보상금 등 실시료지급에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>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</p>				